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47조의 제목 “(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)”를 “(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연동쇄정(聯動鎖錠)”을 “연동잠금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4호 중 “쇄정(鎖錠)되지”를 “잠금되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선로의 보전) ① (생 략)	제10조(선로의 보전) (현행 제1항 과 같음)
제47조(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 위치 유지) ① 본선의 선로전환 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와 연동쇄정(聯動鎖錠)을 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.	제47조(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 위치 유지) ① ----- ----- 연동잠금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49조(속도제한) 도시철도운영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.	제49조(속도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쇄정(鎖錠)되지 아니한 선로 전환기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 우	4. 잠금되지 ----- ----- --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